

함께 봐요 안전보건

01

산업안전보건 동향

-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27명 증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보도

02

사망사고 현황

-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03

산업재해 예방

- 바람직한 교대근무

04

산업재해 보상

- 재택근무 중 재해 인정 /불인정 사례

2021.03

vol.

01

◆ 중대재해처벌법 ◆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 동향

01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본회의 통과



- 2021년 1월 8일(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관료중심적 사고방식과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원안에서 후퇴되었으며 적용범위, 적용대상, 처벌 범위, 처벌대상, 처벌 수준, 행정제재 등이 모두 축소되거나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명시되고 처벌의 하한선(징역 1년 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등이 들어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아쉽다.
- 후퇴한 내용 중 가장 최악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에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제외한 이유 중 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의 어려움을 주장한 것을 수용한 것인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도 않음에도 그 차이를 두는 것은 위험의 차별화를 만드는 행위다.
- 한국노총은 후퇴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활동을 할 것이다.
- **하위법령** :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퇴한 조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응활동 및 노동계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 **양형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법인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가 전체재난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동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 개정활동** :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하거나 삭제된 조항들로 인해 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정활동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여 산재예방의무의 제1주체인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02

고용노동부,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27명 증가



-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하였다.
- 산재사고사망자 증가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정부가 내놓고 실행했던 산재감소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책을 살펴보면 ① 3대 안전조치 정책(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② 산업안전보건 책임주체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의 지도 및 감독 강화 ③ 화재, 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 예방 감독 강화 ④ 지역별 유해 위험요인 밀착 감독 등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 이러한 감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작년과 비교하여 산재사고사망자가 증가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 없이 기존에 해왔던 산재예방대책을 꺾이기만 바뀌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03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보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안을 보도하였다.
 - 이에 한국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인 산안법 위반범죄의 처벌 상향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공청회 지정토론자를 추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양형기준 수정안은 자연인*의 자유형에 대한 상향은 담겨있지만 법인의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담겨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관례대로 판사의 재량권에 맡겨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과거의 판결을 볼 때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지 우려스럽다.
-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결같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개인. 또는, 법인(法人)에 대한 개인·유형인.
- 또한 조치의무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현장노동자와 하급관리자에게만 집중된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처벌로는 산재감소 및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망사고 현황

I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의 특징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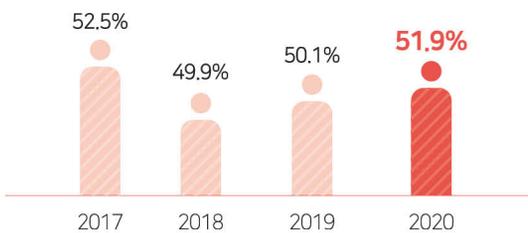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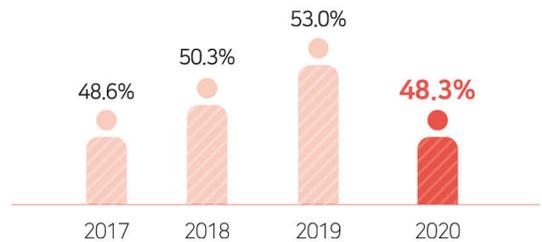
02

지난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추락, 끼임 사고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고 비중



• 추락·끼임 사고 비중



03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I 바람직한 교대근무

○ 교대근무란?

각각 다른 근무시간대에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조를 2개 조 이상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일시적 혹은 임의로 시행되는 작업형태를 제외한 제도화된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교대근무 채택 시 고려사항



○ 바람직한 교대근무를 위한 체크사항

1. 2교대근무는 피해야 합니다.

- 3조 3교대근무나 4조 3교대근무가 바람직, 1일 2교대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는 연속 2~3일을 초과하지 말 것

2.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고정적,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피하고, 야간근무 후에는 1~2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교대순환은 전진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시간표는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4조 3교대는 예외)
예) 주간 근무조 → 저녁 근무조 → 야간 근무조(순환)

5.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야간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24시간~48시간의 휴식을 두어야 합니다.

○ 교대근무의 문제점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과 그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 야간작업 시 신체적 부담

- 야간근무 시 새로 만들어지는 신체 리듬의 형성기간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 야간근무는 오래 계속하더라도 완전히 습관화 되지 않으면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 야간근무 시 주간작업보다 체온상승이 낮습니다.
-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가 쉽게 오게 됩니다.
- 불규칙한 수면습관으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힘들어지는 수면장애가 발생합니다.

6. 야간근무 시 근무 중 간이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야간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작업 시에는 간이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두어야 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근무시간은 노동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중노동, 정신적 노동, 지루한 일 등은 주간에 배치하고,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9. 교대일정은 정기적이고, 노동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교대근무자들이 가정활동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대일정이 미리 알려져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I 재택근무 중 재해 인정/불인정 사례

○ 집에서 일하다 다치고
병든다면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

재택근무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1.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장소 : 사업주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
- 단, 업무수행을 위한 장소 변경을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는 예외적 인정
-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는 불승인(관리책임, 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
3. 시간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 사업주가 사전 승인한 근무외시간(시간 전, 후) 연장근로 등 인정

4. 기타

- 휴게시간 :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에 재택근무지로 제한되어 인정(공동주택은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은 대문을 경계)
- 사적행위 : 재택근무자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 생리적 필요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는 인정

○ 재해 인정/불인정 사례

인정 사례



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진 사고



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택 마당(담장 안쪽)으로 나가다 넘어진 사고



재택근무 중 정해진 휴게시간(점심식사)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주택에서 전기컨트롤 패널 조립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전기드릴 작업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한 사고



주택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불인정 사례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집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진 사고



주택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삐끗한 사고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아이를 안으려다 허리를 삐끗한 재해



개인 빨래를 하던 중 세탁기에서 빨래를 들어 옮기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주택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재택근무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재해



개인 우편물(택배 등)을 수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진 사고